

## 2023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내 기술기반 제조·지식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화 자금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사업을 운영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3월 9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### I 모집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전라북도 내 기술기반 제조·지식서비스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화 자금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기업 육성

#### □ 주요내용

- 공고 및 모집기간 : 23. 3. 9.(목) ~ 3. 28.(화) 24:00까지
- 모집대상
  - 사업화 지원 : 도내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기업(20. 3. 8. ~ 22. 3. 8.)
  - 사후관리 지원 : 기존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수혜기업
- 선정규모 : 총 30개사 내외(사업화 25개사, 사후관리 5개사)
  - ※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인건비, 시제품 제작비,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, 마케팅비
  -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백만원 (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)
    - ※ 자부담 현금 10%, 현물 20%
  - 사후관리 지원금 9백만원 (사후관리 기업 해당)
  -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(워크숍)을 통한 우수기업 추가 10백만원 지원
- 지원기간 : 협약 일 ~ 2023년 10월 31일

##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 □ 신청자격

-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이며,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(20. 3. 8. ~ 22. 3. 8.) 창업기업
- 기존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수혜기업(사후관리 기업 해당)

#### ■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
| 구분    | 확인 서류 및 기준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개인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   |
| 법인기업  |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|

\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### □ 신청제외 기업

-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,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※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### III 지원내용

#### □ 지원내용

- 인건비, 시제품 제작비,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, 마케팅비
  - 사업화 지원금 : 최대 30백만원 (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)

| 연번 | 지원금(원)     | 지원기업(개사)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 | 30,000,000 | 6        | 사업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|
| 2  | 20,000,000 | 10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3  | 10,000,000 | 9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합계 |            | 25       |                  |

- 사후관리 지원금 : 기업당 9백만원 (사후관리 기업 해당)

- 중간 평가 후 우수기업 6개사 대상 추가 10백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

| 연번 | 지원금(원)     | 지원기업(개사) | 예산(원)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1  | 10,000,000 | 6        | 60,000,000 | 우수기업 |
| 합계 |            | 6        | 60,000,000 |      |

#### ○ 지원항목

| 구분            | 세부항목          | 항목정의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인건비           | 인건비           | ○ 직원이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|
| 시제품 제작비       | 외주용역비         | ○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|
|               | 재료비           | ○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(화학적, 물리적 작용을 통해)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기자재구입비        | ○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로써,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<br><b>단, PC 및 노트북 구입 불가 ※지원금의 20%</b> |
|               | 기자재임차비        | ○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경비   |
|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 | 지식재산권 확보비     | ○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|
|               | 시험인증비         | ○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, 분석,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 |
| 마케팅비          | 전시회참가비        | ○ 국내,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등 소요비용  |
|               | 홍보영상 및 홍보물제작비 | ○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홈페이지 개선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|
|               | 온라인쇼핑몰 입점료    | ○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<br>* 앱(APP)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온오프라인 홍보비     | ○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일간지 정기 간행물 등 소요되는 비용   |
| 회계비           | 회계감사비         | ○ 지원금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<b>※30만원</b>  |

- 사업비 구성 : 지원금의 30% 자부담(현금 10%\*, 현물 20%)

\*현물: 인건비(창업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), 보유 기자재,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

#### <사업비 구성 예시>

| 총 사업비   | 지원금     | 창업기업 자부담 |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|         | 현금       | 현물    |
| 3,900만원 | 3,000만원 | 300만원    | 600만원 |
|         | 100%    | 10%      | 20%   |

## IV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3. 3. 9.(목) ~ 3. 28.(화) 24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

- 온라인 신청 플랫폼(<http://event.jbci.or.kr>) - 2023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공고 - 신청하기

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→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→ ③ 2023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'신청하기' 선택 →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→ ⑤ 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 →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→ ⑦ '신청-접수확인' 메뉴 선택 →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→ ⑨ '접수현황확인'

- 사업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
- 신청서 수정 및 접수 확인은 공고 마감일까지 가능

※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 '온라인 신청 플랫폼' 접속이 차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육성팀 063-220-8925, gj21@ceei.kr

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| 구분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필수여부 | 비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|
| 1  | ■ 참여 신청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) 및 사업계획서 |   | 필수   | 1부  |
| 구분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필수여부 | 비고  |
| 1  | ■ 대표자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필수   | -   |
| 2  | ■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<br>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              | 필수   | -   |
|    | ■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<br>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<br>폐업사실증명(폐업 이력 있을 시) |      |     |
| 3  | ■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  |
| 4  | ■ 실적증빙서류(기업성과 작성자) 및 기타제출서류(아이템 관련)  |   | 선택   | 해당자 |

□ 실적증빙 제출서류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매출 |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출 | 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 등 |
| 투자 | 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        |
| 고용 |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V 신청 절차

### □ 선정평가

#### <선정평가 절차>

| 1단계 서면평가  | 2단계 발표평가   | 최종선정   |
|---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 · 사업성 평가</li> <li>최종선정 기업 1.5배수 선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표자 역량 및 사업화 평가</li> <li>기업 대표 발표 및 질의응답 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</li> <li>창업지원 및 교육 진행</li> </ul> |

#### ○ 서면평가

- 평가항목 :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, 성장 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, 대표자 역량 등
- 최종 선정 기업의 1.5배수 선발

#### ○ 발표평가

- 평가항목 :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, 아이টে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

#### ○ 최종선정 :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

\*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|  |   |   |   |  |
|--|---|---|---|--|
| <b>사업공고</b><br>2023. 3. 9. ~ 3. 28.<br>홈페이지          | ⇒ | <b>신청서 접수</b><br>2023. 3. 9. ~ 3. 28.<br>온라인 신청 플랫폼 | ⇒ | <b>결격사유검토</b><br>2023. 3. 29. ~ 3. 30.         |
|  |   |   |   | ↓  |
| <b>2차 발표평가</b><br>2023. 4. 13. ~ 4. 14.              | ← | <b>서면평가 통과자 안내</b><br>2023. 4. 10.<br>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  | ← | <b>1차 서면평가</b><br>2023. 4. 6. ~ 4. 7.<br>평가위원회 |
| <b>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안내</b><br>2023. 4. 17.<br>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|   |   |   |  |

※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VI

##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#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### 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**참고 1**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| 구분 | 대상 업종  | 코드번호<br>세세분류 |
|----|--|--------------|
| 1  | 금융 및 보험업   | K64~66       |
| 2  | 부동산업   | L68          |
| 3  | 숙박 및 음식점업<br>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<br>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 | I55~56       |
| 4  | 무도장 운영업  | 91291        |
| 5  |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| 9112         |
| 6  |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 | 9124         |
| 7 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| 96           |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## 참고 2

##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공고일 기준)

### □ 창업여부 기준

| 창업이력        | 신청기업 구분<br>(판단기준) | 상세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창업여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상속/증여       | 개인 / 법인           |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<br>또는 폐업 여부 무관 | 동종유지       | 불인정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| 창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창업이력<br>있음  | 개인기업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| 불인정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| 창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| 폐업 3년 초과    | 창업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부도/파산 2년 초과 | 창업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창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창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법인기업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| 이종창업        | 창업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동일인인 경우     | 불인정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일인이 아닌 경우 | 창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               | 법인전환       | 동종창업        |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| 창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| 창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| 동일인인<br>경우  | 폐업 3년 초과          | 창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부도/파산 2년 초과       | 창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동일인이 아닌 경우        | 창업 |
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| 자회사 해당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불인정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
1. "기존 사업을 폐지하고"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
2.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
3. "동일인"이란,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
  - 가.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(출자지분 포함)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한 경우
  - 나.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
4. "친족"이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,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
5. "자회사"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. 이 경우,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
6.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(부도·파산 2년)
7.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